

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주미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9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8. 28.
발의자 : 주미희 의원 외 3인

1. 개정이유

-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,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,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,
-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의 근거가 없어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음.
-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가능한 곳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세대별 계량기 설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통합수도요금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웃과의 갈등을 줄이며, 궁극적으로 수자원 절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- 국가유공자 및 5.18민주화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수도급수조례」 제35조에 의거 일정 금액의 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.
- 특수임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「안산시 수도급수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다가구주택, 근린생활시설에도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
(안 제7조제1항)

○ 특수임무수행유공자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(안 제35조제1항)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 없음

5. 관계규정발췌서 : 붙임

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공동주택 단지” 를 “다가구주택, 균린생활시설, 공동주택 단지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)</p> <p>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, <u>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</u>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,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7. ~ 11.(생략)</p>	<p>제7조(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)</p> <p>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, <u>다가구주택,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. ~ 12. (종전의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

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

의 안 번 호	2693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9월 15일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「환경부 표준급수조례」에 의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한 대상에
다가구주택은 반영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미 반영되어 있어 세대별
계량기 설치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안산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제1항 세대별 계량기의
설치 등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함.

안산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 단지”를 “공동주택 단지”로
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